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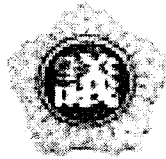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2)

제 139 회 정 령 회

2006. 9.15(금)13:00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신수)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684
----------	------

발의년월일 : 2006. 9.

발 의 자 : 이재호 의원 등 인

□ 제안이유

- 2006. 4.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의거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의회의 자율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원활한 의정 활동에 필요한 기일을 교섭단체 대표간의 면밀한 검토와 합의를 토대로 종전보다 연장하여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명칭 변경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 연간회의 총일 수(안 제2조) : 110일 이내(당초 80일)

○ 회 기(안 제3조)

- 정례회 회기 : 50일 이내(연 2회)
- 임시회 회기 : 20일 이내

○ 정례회 집회(안 제5조)

- 제1차 정례회 : 매년 7월 1일
-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20일

※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한다

검 토 보 고

□ 조례 개정 법적근거 판단

- 2006. 4. 28일자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이 개정되어,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2006. 7. 1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조례의 개정은 적법 하다고 판단되며

□ 주요 개정 내용 판단

- 연간회기 일수와 관련하여 금번 개정조례는 당초 80일에서 110일로 30일이 연장되는 것으로서 이 일수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 광역의회의 연간 회기일수 120일에 근접하는 것이며,
특히 광역의회인 경기도, 부산시는 개정조례도 120일로 정하였으며, 경기도의 기초의회의 경우는 수원시가 유일하게 연간 회기 일수를 100일 이내로 정하고 나머지는 현행일수로 운영하면서 앞으로 개정계획은 별첨1과같이 대부분 90일 전후에서 정할것으로 우리시의 110일은 이들보다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 의견

- 현행 조례안의 개정은 적법 하나, 개정 회기일수가 당초보다 37.5%가 한번에 급증하여 장기간의 회기운영에 따른 부작용과 집행부의 의회업무 소요시간 증가로 인한 중요시정시책사업추진과 대민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효율적인 의회 회기운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 현행 회기도 80일중에서 2~3일의 여유 회기를 둔 것을 감안하면, 주요업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회기 마다 현일수보다 2~3일(총10일)의 회기를 추가 배정하여, 현행 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운영하면서 늘어난 회기일수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면서 점진적으로 회기일수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내 기초의회 회기 조정일수

시 별	수원시(확정)	안양시	부천시	용인시	광명시	시흥시	남양주시
회기일수(계획)	100	90 ~ 100	90 이내	90 ~ 100	90이내	90 이내	80 이내

개정조례에 따른 주요업무 회기일수 조정(안)

회기 구분	개회시기	주요업무	현행 일수	조정 일수	증감 일수	비고
계			32	42	10	
임사회	1월	시정업무계획 청취(1월)	4	6	2	
임사회	4~6월	제1회 추경예비심사	3	6	3	
		예결위 종합심사	1	1	0	
제1차 정례회	7월	전년도 결산승인심사	2	2	0	
		예결위 종합심사	1	1	0	
임사회	9~10월	제2회 추경예비심사	3	3	0	
		예결위 종합심사	1	1	0	
임사회	10~11월	행정사무처리사항청취	4	6	2	
제2차 정례회	11~12월	본예산 예비심사	4	6	2	
		행정사무감사	7	7	0	
		제3회 추경예비심사 및 감사보고서 작성	2	3	1	
		예결위 종합심사	1	1	0	

위원회별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심사일정 배정(안)

위원회별	회기 일수 산정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기획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중앙문화센터 시설관리공단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분당구	수정구 시설관리공단	중원구 산업진흥재단
사회경제위원회	문화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 보건소	중원구 시설관리공단	수정구	성남문화재단	분당구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분당구	도시개발사업단 시설관리공단	중원구	수정구